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建設機械管理法施行規則 [別紙第16号の2書式] <改正2023年5月8日>

※以下の作成方法をよく読んで記入し、[]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建設機械管理法」第7条第2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11条第2項に基づき、建設機械登録原簿の

[] 등본 [] 발급 을 신청합니다.
 [] 謄本 [] 発給 を申請します。
 [] 초본 [] 열람
 [] 抄本 [] 閱覽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시·도지사
市・道知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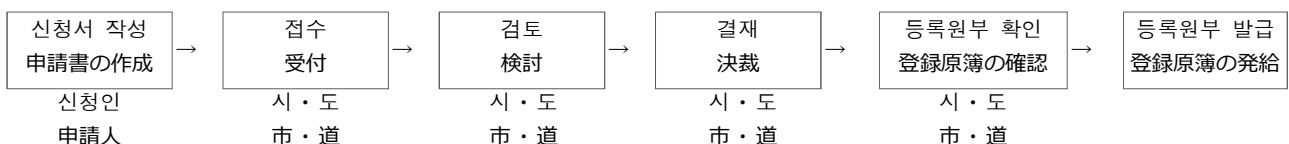
귀하
殿

첨부서류 添付書類	없음 なし	수수료 手数料 - 열람: 1건당 1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閲覧: 1件につき100ウォン (電子民願窓口からの申請は無料) - 발급: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発給: 1件につき500ウォン (電子民願窓口からの申請は無料)
--------------	----------	--

작성 방법 作成方法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建設機械登録原簿の謄本(抄本)は申請書の内容を全部記入しないと発給されません。但し、建設機械の所有者の住民登録番号又は住所は必ずしも記入する必要はなく、申請人が建設機械の所有者の住民登録番号又は住所を記入しない場合は、建設機械登録原簿の謄本(抄本)発給時に建設機械の所有者の個人情報を保護するため建設機械の所有者の住民登録番号後半の6桁又は住所は表記しないでください。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建設機械登録原簿の申請書の内容を全部記入しないと閲覧できません。但し、建設機械の所有者の住民登録番号又は住所は必ずしも記入する必要はなく、申請人が建設機械の所有者の住民登録番号又は住所を記入しない場合は、建設機械登録原簿の閲覧時に建設機械の所有者の個人情報を保護するため建設機械の所有者の住民登録番号後半の6桁又は住所は表記しないでください。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 建設機械登録原簿に記載されている抵当権者又は差押債権者が申請する場合は、建設機械変更前の登録番号及び所有者(抵当権又は差押設定時の所有者)の基本事項を記入することができます。

처리 절차 処理の流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